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2

심의일자	2017.11.21.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/ 용산구 이촌동 301-160외 2		
의결번호	2017-31-5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[심의 내용] 건축 심의			
<p>■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『건축법』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</p>			
< 건축 분야 >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계획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신설되는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 연결부분을 구조안전성을 검토하고,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바람.○ 32동 수평 증축부의 지상1층 돌출계단은 안전을 고려하여 일자형으로 조정 바람.○ 일부 주동의 태양광 패널은 옥탑에 의한 음영 영향이 없도록 배치 바람.○ 지하주차장과 기존 건물 사이의 흠막이 설치계획은 착공 전 구조, 굴토심의 시 면밀히 검토되도록 조치 바람.○ B.F 인증을 받도록 검토 바람.(권장)○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은 신청한대로 173형, 176형, 140형, 141A·B형, 114A·B·C·D·E형, 95A·B·C·D형, 118형, 124형, 200형, 102형, 107형 20% 완화 인정함.○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6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 신청에 대하여 「건축법」 제46조 건축선 지정, 「건축법」 제56조 용적률, 「건축법」 제58조 대지안의 공지, 「건축법」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를 인정함.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구조계획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수평증축 부분과 기존 골조와의 구조 연결부, 기초 설계부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바람.(수직방향 변형과 침하를 고려한 검토 필요)			
- 계속 -			

2017.11.21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2

심의일자	2017.11.21.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/ 용산구 이촌동 301-160외 2		
의결번호	2017-31-5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
[심의 내용] 건축 심의

< 공통사항 >

1.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 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.
가. 녹색건축물 인증 : 일반(그린4)등급 이상
나.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: 1등급 적용,
다.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3.02% 적용
2.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, 급·배기구,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(SKY VIEW)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.
3. 수돗물 재처리시설(중앙정수처리장치) 설치·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, CO₂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“불필요한 시설”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.
4.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(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).
 - 1) 대지면적 1,000㎡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,500㎡이상의 건축물.
 - 2)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‘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’을 참고하여 적용.
5. 『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』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설계·시공하기 바람. 끝.

2017.11.21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